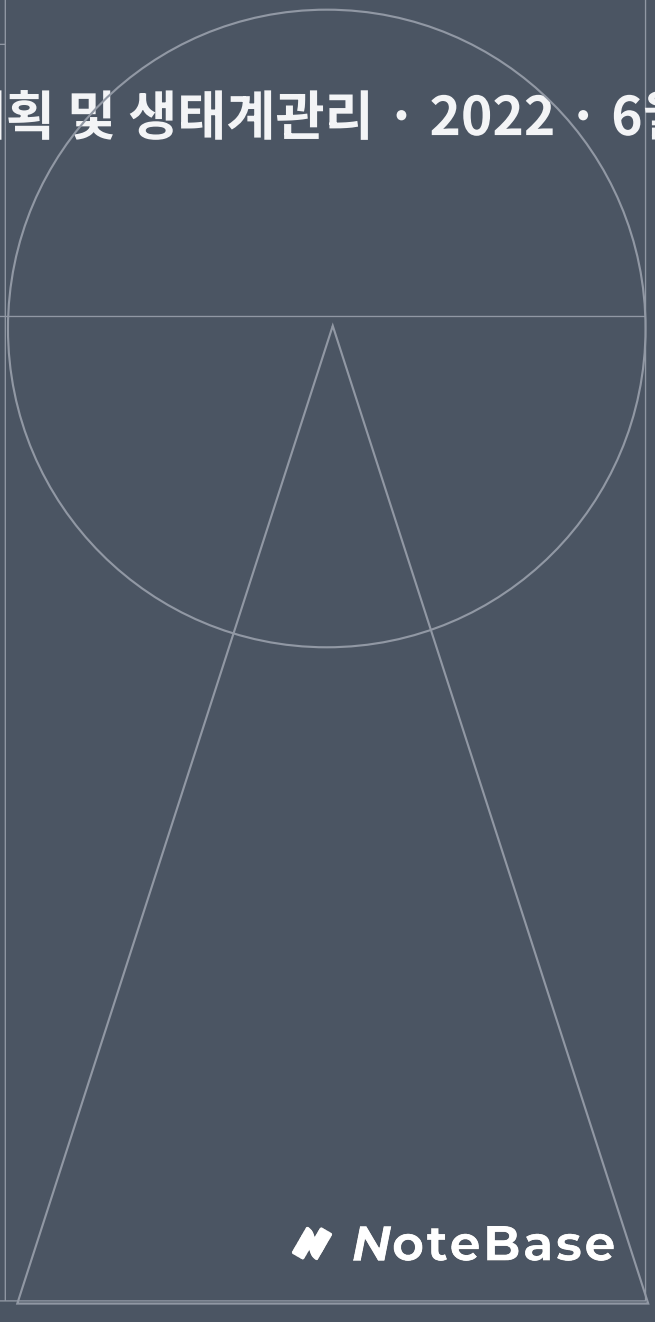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2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2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2 · 6월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하천
② 광장
③ 녹지
④ 주차장

정답 1번

①

하천은 유수지·저수지 등과 함께 **방재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5. 방재시설 :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②

광장은 방재시설이 아니라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NoteBase

③

녹지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④

주차장은 방재시설이 아니라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1.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NoteBase

문 2.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② “자연생태”라 함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③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④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답 2번

①

생물다양성은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 법의 정의에서는 수생생태계 중 **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2025.11.11>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②

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는 **생태계**이다. **자연생태**는 자연 상태의 지리적·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2025.11.11>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 · 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NoteBase

③

생태축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서식공간**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2025.11.11>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④

자연환경은 지하·지표·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태계와 자연경관도 포함한다. 이 정의에서 **해양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2025.11.11>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NoteBase

문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m^2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역세권개발사업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③ 학교 설치공사

④ 혁신도시개발사업

정답 2번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2 · 6월

①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20만㎡는 기준에 미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파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qqbVUgAoqCVuOkRJwy04Zng1oktjFZM.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는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20만㎡도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사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k6rXm7Qkfhuw0iN_cssYntgP-aI5G1kk.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③

학교 설치공사는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20만㎡는 기준에 미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자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Dzx4E_ptQ_9ajOIKQXr8ODcwY5jDujz0.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④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20만㎡는 기준에 미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타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8VnK5yAdzkkp0nmeKa0EcUc7E9gX5Fh.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문 4.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③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가 있는 곳
④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정답 3번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NoteBase

③

사찰이나 전통사찰보존지에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기준이 아니다**. 해당 사찰·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전이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④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NoteBase

문 5.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높이가 6m인 건축물 옥상에 “H3.5(m)×R12(cm), 청단풍 1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상기 수목이 산정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수는? (단, H는 수고, R은 근원직경이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정답 3번

공통 해설

지표면에서 6m 높이인 옥상은 옥상조경에 해당한다. 수고 3.5m·근원직경 12cm인 청단풍은 규격에 따른 교목 수량 가중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옥상에 식재한 교목은 실제 수량의 1.5배로 산정**하므로 10주는 15주로 인정된다.

조경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조경기준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NoteBase

문 6.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에 명시된 서울특별시의 나무, 꽃, 새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은행나무 - 개나리 - 까치
② 은행나무 - 진달래 - 박새
③ 소나무 - 개나리 - 까치
④ 소나무 - 진달래 - 박새

정답 1번

나무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이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나무 : 은행나무

꽃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이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꽃 : 개나리

새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새는 **까치**이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새 : 까치

NoteBase

문 7. <보기>의 A~D 중 MacArthur와 Wilson의 도서(섬) 생물지리이론에 근거할 때 섬 내의 생물종의 수가 가장 많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보기〉

	섬과 육지와의 거리	섬의 크기
A	멀다	작다
B	가깝다	작다
C	멀다	크다
D	가깝다	크다

① A

② B

③ C

④ D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D처럼 **육지와 가깝고 면적이 큰 섬**은 생물종의 이입이 쉽고 절멸 위험이 낮다. 두 조건이 함께 작용하므로 평형 상태에서 유지되는 종수가 가장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MacArthur와 Wilson의 도서 생물지리이론은 새로운 종이 섬에 들어오는 이입과 섬에 살던 종이 사라지는 절멸의 균형으로 종수를 설명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육지와 가까울수록 생물이 도달하기 쉬워 이입률이 높고, 면적이 클수록 서식 공간과 자원이 풍부하여 개체군을 유지하기 쉬우므로 절멸률이 낮다.

① A — 육지에서 멀고 작은 섬이다. **낮은 이입률과 높은 절멸률**이 함께 작용하므로 네 조건 중 유지되는 종수가 가장 적다.

② B — 육지와 가깝고 작은 섬이다. 가까운 거리로 이입에는 유리하지만, **작은 면적에 따른 절멸 위험**이 크다. 거리가 가까운 조건이 같은 D보다 유지되는 종수가 적다.

③ C — 육지에서 멀고 큰 섬이다. 큰 면적으로 절멸 위험은 낮지만, **먼 거리에 따른 이입의 제약**이 있다. 면적이 큰 조건이 같은 D보다 유지되는 종수가 적다.

④ D — 육지와 가깝고 큰 섬이다. **높은 이입률과 낮은 절멸률**이 함께 작용하여 종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데 모두 유리하다.

따라서 이입에 유리한 거리 조건과 절멸을 줄이는 면적 조건을 모두 갖춘 D에서 평형 종수가 가장 많다.

NoteBase

문 8. 경관생태학에서 경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바탕(matrix)

② 조각(patch)

③ 크기 분포(size distribution)

④ 통로(corridor)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크기 분포는 경관을 이루는 공간 요소가 아니라, 조각들이 크기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경관 구조의 특성**이다. 경관의 기본 구성요소는 바탕·조각·통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바탕(matrix)은 조각과 통로를 둘러싸는 **경관의 배경**이다. 예를 들어 농경지 사이에 작은 숲들이 흩어져 있다면 농경지를 바탕으로 볼 수 있다.

② O: 조각(patch)은 **주변과 구별되는 비교적 균질한 공간**이다. 농경지 안의 작은 숲이나 습지처럼 주변과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진 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③ X: 크기 분포(size distribution)는 조각들의 크기가 얼마나 다양하고 각 크기의 조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구성요소 자체가 아니라 구성요소의 크기를 분석하는 기준**이며, 경관의 기본 구성요소는 바탕·조각·통로로 구분한다.

④ O: 통로(corridor)는 주변과 구별되는 **선형의 경관 요소**이다.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식생대나 방풍림 띠가 그 예이며, 생물의 이동 경로나 서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한라산 - 강천산 - 황매산

② 한라산 - 칠갑산 - 운문산

③ 지리산 - 무등산 - 천마산

④ 지리산 - 금오산 - 강천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강천산은 **군립공원 제1호**이며, **도립공원 제1호는 금오산**이다. 공원의 종류별로 최초 지정된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대응 관계 해설

제1호 국립공원 — 지리산: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자리는 한라산이 아니라 지리산이다.

제1호 도립공원 — 금오산: 금오산은 **1970년 6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도립공원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자리는 금오산이며, 강천산·칠갑산·무등산은 이 대응을 충족하지 않는다.

제1호 군립공원 — 강천산: 순창군의 강천산은 **1981년 1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강천산은 도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 자리에 대응한다.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순서에 대응시키면 '지리산 - 금오산 - 강천산'이므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도시 내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빗물정원(rain garden)

② 건축물높이규제(building height regulation)

③ 생물저류지(bioretention)

④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건축물높이규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수단으로, **빗물의 침투·저류와 오염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발생한 곳에서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저영향개발(LID)은 식생·토양 등의 자연적인 기능을 이용해 빗물을 발생 지점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개발 전의 물순환 특성을 유지하려는 접근이다. 여기서 O/X는 각 시설이나 수단이 저영향개발 기법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O: 빗물정원은 주변보다 낮게 조성한 식재 공간에 지붕이나 포장면의 빗물을 모으는 시설이다. 모인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토양으로 침투시키거나 식생을 통해 여과**하여 빗물 유출과 오염물질을 줄인다.

② X: 건축물높이규제는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높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빗물을 침투·저류하거나 처리하는 기법이 아니므로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저영향개발 기법에는 빗물정원이나 생물저류지처럼 현장에서 빗물의 흐름과 수질을 관리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③ O: 생물저류지는 식생과 토양층을 이용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고 여과·처리하는 시설이다. **식생과 토양을 통한 빗물 관리**로 유출과 오염을 줄이며, 소규모 생물저류시설은 빗물정원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④ O: 인공습지는 자연습지의 기능을 모방하여 빗물을 받아 저장하고 여과·처리하는 시설이다. **습지의 저류·정화 기능**을 이용하여 빗물 유출과 오염을 줄이는 저영향개발 기법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주제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정원
② 치유정원
③ 공동체정원
④ 모델정원

정답 3번

①

교육정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제정원**이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 · 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9.22>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②

치유정원은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제정원**이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 · 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9.22>
6. 주제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NoteBase

③

공동체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주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주제정원과 별도로 구분되는 정원**이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 · 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9.22>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 · 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 · 운영하는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④

모델정원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제정원**이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 · 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9.22>
6. 주제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NoteBase

문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 서울시에서 대지면적 3,000m^2,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최소 조경면적[m^2]은?

① 150

② 300

③ 350

④ 450

정답 4번

공통 해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소 조경면적은 $3{,}000 \times 0.15 = 450m^2$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5.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NoteBase

문 13.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오톱유형도
② 현존식생도
③ 토지이용현황도
④ 토지피복현황도

정답 1번

①

비오톱유형도는 **기본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한 결과도**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성하지만 기본주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 · 토지피복현황도
2. 투수 · 불투수현황도
3. 지형주제도 :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
4. 현존식생도
5. 동 · 식물상주제도
③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②

현존식생도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주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4. 현존식생도

NoteBase

③

토지이용현황은 **기본주제도인 토지이용 · 토지피복현황도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 · 토지피복현황도

④

토지피복현황은 **기본주제도인 토지이용 · 토지피복현황도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 · 토지피복현황도

NoteBase

문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③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④ 도시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NoteBase

④

도시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법정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수립권자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 · 관리 · 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oteBase

문 15. 생활사 전략 중 k-선택 생물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경쟁력

② 어린 자손의 생존율이 낮음

③ 천이 후기종

④ 긴 생활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어린 자손의 생존율이 낮음'은 r-선택 생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K-선택 생물은 자손 하나하나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어린 자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K-선택 생물은 안정된 환경에서 개체군 크기가 환경수용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수용력은 주어진 환경이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이며, 이에 가까워지면 먹이·공간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커지므로 **높은 경쟁력**이 유리하다.

② X: K-선택 생물은 전형적으로 적은 수의 자손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므로 어린 자손의 생존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경향**을 보인다. 동물에서는 자손을 보호하고 돌보는 행동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많은 자손을 생산하지만 각 자손에 대한 투자가 적어 어린 시기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r-선택 전략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③ O: 천이 후기에는 군집이 비교적 안정되고 생물 사이의 자원 경쟁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빠르게 퍼져 빈 공간을 차지하는 능력보다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며 오래 생존하는 능력**이 유리하여, K-선택적 특성을 지닌 종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O: K-선택 생물은 일반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느리고 번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으며 수명이 길다. 빠른 번식보다 **성장·유지와 장기간의 생존**에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긴 생활사가 특징이다.

NoteBase

문 16. 홀(Hall)이 주장한 4종류의 대인 간격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 ― 0~1.5피트(0~45cm)의 거리로서 아기를 안아 준다거나 이성 간의 교제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거리

②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 1.5~4피트(45cm~1.2m)의 거리로서 레슬링, 씨름 등 스포츠 시에 유지되는 거리

③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 4~12피트(1.2~3.6m)의 거리로서 주로 업무상의 대화에서 유지되는 거리

④ 공적 거리(public distance) ― 12피트(3.6m) 이상의 거리로서 배우, 연사 등의 개인과 청중 사이에 유지되는 보다 공적인 모임에서 유지되는 거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레슬링·씨름처럼 몸을 맞붙이는 활동은 **친밀한 거리**의 사례이다. 개인적 거리는 신체를 밀착하는 상황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친밀한 거리는 0~1.5피트(약 0~45cm)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이다. 아기를 안거나 연인끼리 밀착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② X: 개인적 거리의 범위인 1.5~4피트(약 45cm~1.2m)는 맞지만, 레슬링·씨름의 사례를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몸을 맞붙이는 레슬링·씨름은 친밀한 거리**에 해당한다. 개인적 거리는 가까운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개인의 공간을 유지하는 거리로 설명해야 한다.

③ O: 사회적 거리는 4~12피트(약 1.2~3.6m)로, **업무상 대화와 비개인적인 교류**에 주로 이용된다. 상대와 신체를 접촉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사소통하는 상황이다.

④ O: 공적 거리는 12피트(약 3.6m) 이상으로, **연사·배우와 청중 사이**처럼 공적인 의사소통에 이용된다. 가까운 사람끼리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거리보다 넓은 간격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NoteBase

문 17. 저탄소형 생태도시 전개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②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의제 21과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③ 1997년 일본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이뤄졌다.

④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로드맵에서는 의제 21의 성과평가 및 미래의 실천목표와 구체적 실현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제 21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것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이다. **발리로드맵은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협상의 추진계획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는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다루고 **인간환경선언인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한 원칙과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범지구적 환경 대응의 주요 출발점이다.

② O: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국가적·지역적 행동계획이다. UNFCCC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뜻하며 리우회의의 주요 성과와 연결된다. 다만 절차를 엄밀히 구분하면 협약은 1992년 5월 뉴욕에서 채택되었고, 같은 해 6월 리우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③ O: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등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부여한 국제적 합의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④ X: 의제 21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실천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한 회의는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발리로드맵은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상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선지는 요하네스버그 회의의 연도·논의 내용을 발리로드맵과 잘못 연결하였다.

NoteBase

문 18.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생태마을의 지정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 · 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 · 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NoteBase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NoteBase

문 19. 19. <보기>는 온대중부기후대에 속하는 A지역의 월별 평균 기온이다. 이 지역의 온량지수(溫量指數)는?

〈보기〉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 평균 기온(℃)	-2	-1	4	10	18	20	24	26	17	13	7	2

① 91

② 93

③ 95

④ 97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온량지수는 월평균기온이 5°C 이상인 달마다 **5°C를 뺀 값을 합산**한다. 이 지역은 4~11월이 해당하며, 각 달의 초과 기온을 더하면 95°C·month이다.

계산 과정

온량지수는 식물 생장에 유효한 따뜻함의 누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월평균기온이 5°C 이상인 달에 대해 계산하며, 각 달의 월평균기온을 T_i라 하면 $WI = \sum(T_i - 5)$이다. 즉, 해당 달의 기온 전체가 아니라 **기준 기온 5°C를 초과한 부분**을 더한다.

계산 대상: 표에서 4~11월의 월평균기온은 차례로 10, 18, 20, 24, 26, 17, 13, 7°C로, 모두 5°C 이상이다. 1~3월과 12월은 각각 −2, −1, 4, 2°C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월별 초과 기온: 4월부터 11월까지 각 기온에서 5°C를 빼면 차례로 5, 13, 15, 19, 21, 12, 8, 2°C이다. 예를 들어 4월은 10 − 5 = 5°C만큼 온량지수에 기여한다.

합산: 5 + 13 + 15 + 19 + 21 + 12 + 8 + 2 = 95이다. 월별 초과 기온을 누적하므로 단위는 °C·month이며, 온량지수 95°C·month는 ③의 95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조경계획과 설계의 과정 중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 계획
② 기본 설계
③ 실시 설계
④ 기본 구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여 공간 구성과 동선 등의 **개략적인 방향을 정하는 단계**는 기본 구상이다. 이 구상을 구체적인 배치와 부문별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계획과 구별한다.

개념 구분

기본 구상: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어떤 기능과 시설을 도입하고 공간과 동선을 어떻게 구성할지 큰 틀을 정한다. 문항의 **'자료를 종합하여 개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한다는 설명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기본 계획: 기본 구상에서 정한 방향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동선, 시설 배치, 식재 등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한다. 기본 구상이 공간 구성의 큰 방향을 잡는다면, 기본 계획은 **그 방향을 실제 배치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기본 설계·실시 설계: 기본 설계는 기본 계획을 설계도면으로 발전시키며 공간과 시설의 형태·규모·재료 등을 구체화한다.

실시 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두 단계 모두 개략적인 구상을 정한 뒤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NoteBase